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14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5호, 2019.7.31.) 제2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82호, 2020.03.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0년 05월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점검항목(제5조제1항 관련) 2. 심사불능, 3. 심사조정외 일부 항목을 [붙임]과 같이 신설·삭제한다.

부 칙(2020.5.20.)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신설(24항목)

2. 심사불능

코드	세부 코드	내역
64	09	기타 사유(‘심사내역통보문’ 참조)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등록번호 기재형식 착오기재
SJ	01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청구대상이 아닌 진료분 청구

3. 심사조정

코드	내역
B	시범사업 명세서 외 청구로 조정(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2871호, 2019.12.13.)
B	시범사업 대상자 정보 제출 현황 비교 조정(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2871호, 2019.12.13.)
B	최대 인정횟수 초과분 조정(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2871호, 2019.12.13.)
B	시범사업 대상수가 외 청구로 조정(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2871호, 2019.12.13.)
B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명세서 외 조정(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8816호, 2019.12.31.)
B	교육상담료 점검서식 비교 조정(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8816호, 2019.12.31.)
B	교육상담료 인정횟수 초과분 조정(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8816호, 2019.12.31.)
B	입원명세서 교육상담료 인정횟수 초과분 조정(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8816호, 2019.12.31.)
B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명세서 외 조정(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8816호, 2019.12.31.)
B	외래 명세서 외 조정(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8816호, 2019.12.31.)
B	환자관리료 점검서식 비교 조정(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8816호, 2019.12.31.)
B	환자 관리료 인정횟수 초과분 조정(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8816호, 2019.12.31.)

코드	내역
B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수가 외 조정(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8816호, 2019.12.31.)
B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인증조사 미 신청기관 필요인력 가산 조정(고시 제2009-214호 및 제2009-216호, 2010.4.1. 시행)
B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하위 20%기관 필요인력 가산 조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9-214호 및 제2009-216호, 2010.4.1. 시행)
B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적정성 평가 또는 인증조사 미 신청기관 입원료 가산 조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14호 및 제2009-216호, 2010.4.1. 시행)
B	[치과]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인증조사 미 신청기관 필요인력 가산 조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14호 및 제2009-216호, 2010.4.1. 시행)
B	[치과]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하위 20%기관 필요인력 가산 조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14호 및 제2009-216호, 2010.4.1. 시행)
B	[치과]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적정성 평가 또는 인증조사 미 신청기관 입원료 가산 조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14호 및 제2009-216호, 2010.4.1. 시행)
B	[한방]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인증조사 미 신청기관 필요인력 가산 조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14호 및 제2009-216호, 2010.4.1. 시행)
B	[한방]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하위 20%기관 필요인력 가산 조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14호 및 제2009-216호, 2010.4.1. 시행)
B	[한방]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적정성 평가 또는 인증조사 미 신청기관 입원료 가산 조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14호 및 제2009-216호, 2010.4.1. 시행)